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안) 보고

철 도 국

2015. 5. 21.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4. 협약 개요

□ 협약당사자 : 7개 기관(별내선 사업시행, 운영 및 사업비 부담기관)

○ 사업시행기관 : 경기도, 서울시

○ 사업비 부담기관 : 남양주시, 구리시, LH, 경기도시공사

○ 운영기관 : 서울도시철도공사

□ 주요 협약내용

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협약서 제4조 관련)

○ 기존 서울지하철 8호선과의 연계 및 운영효율성을 감안하여 공종구분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시행(「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3조)

<공종별 사업시행 주체>

구분	공종	시행주체		비고
독립시설	선로(노반·궤도), 정거장		서울시	경기도
공동시설	시스템 분야	설계, 자재구매, 시운전, 신호		서울시
		송변전, 전차선, 역무자동화, 통신	서울시 (BN3까지)	경기도 (BN3이후)
	차량(기존차량 개량 포함)		서울시	
	차량기지 개량 및 증설		서울시	
	모타카선, 주차시설(BN6)		경기도	
부대용역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기도	
	교통안전진단, 사후환경영향조사		경기도, 서울시	

나.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협약서 제5조 관련)

○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비 부담(「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 경기도·서울시 : 독립시설(실제 소요사업비), 공동시설(거리 비례)

· 남양주시·구리시 :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50% 부담

※ 광역철도 재원 : 국비 70%, 지방비 30% (서울시 국비 50%, 지방비 50%)

○ LH, 경기도시공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1,635억원 정액 부담

· LH(별내, 갈매) : 1,200억원, 경기도시공사(다산진건, 지금) : 435억원

다.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협약서 제9조 관련)

- 별내선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은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운영주체인 서울·남양주·구리시가 각각 부담 또는 수익
- ※ 별내선사업 준공일 12개월 이전까지 운영협약을 별도로 체결

라. 토지 및 시설의 귀속(협약서 제11조 관련)

- 별내선 사업으로 건설되는 시설물 및 토지·물건의 권리는 운영주체(철도 운영비 전액부담)인 서울·남양주·구리시에 각각 귀속
- 철도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및 구분지상권은 운영기관이 무상으로 사용

5. 향후 계획

- 업무협약서 체결완료(직인 날인) ‘15. 5월
- 우선시공분 착공 ‘15. 12월
- 본공사 착공 ‘16. 6월
- 준공 ‘21. 12월

- 붙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별내선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1부.
3. 별내선 사업비 분담기준 및 분담내역 1부. 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안)

2015. 5.

서울특별시
경남양주시
구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경기도시공사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경기도” 라 한다.), 남양주시(이하 “남양주시” 라 한다.), 구리시(이하 “구리시” 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 라 한다.) 및 경기도시공사(이하 “경기도시공사” 라 한다.)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지하철 8호선을 서울시 암사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12.906km를 연장하여 운영하기 위해 건설하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별내선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내선 기본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014-822(2014.12.18.)호로 고시한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말한다.
2. “별내선사업비”란 별내선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초기차량구입비의 합을 말한다.
3. “사업시행기관”이란 별내선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4. “사업비부담기관”이란 별내선사업비를 부담하는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LH 및 경기도시공사를 말한다.
5. “독립시설”이란 별내선 본선(토목·궤도), 정거장(건축, 전기 포함), 기계설비 등 열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공동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6. “공동시설”이란 별내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 시설로 차량기지, 차량, 변전소(정거장과 별도 구획된 BN1, BN6 구조물), 유치선 및 모타카선(노선 종점부 BN6 인근 시설물), 시스템 분야 등을 말한다.

7. “시스템분야”란 별내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송변전, 전차선,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 종합사령실 및 차량개량 등을 말한다.

8. “부대용역”이란 관련법령에 따라 별내선 전체 구간에 대하여 시행하여야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개발사업), 철도교통안전진단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을 말한다.

9. “BN6정거장”이란 별내선 기본계획의 BN6정거장을 말한다.

10.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이란 별내지구, 갈매지구, 다산진건지구 및 다산지금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별내선사업으로 확정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사업범위) 별내선사업의 범위는 별내선 기본계획상의 별내선 건설과 운영 및 기타 사업시행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독립시설은 별내선 기본계획 노선 상 기점부터 3km800까지 서울시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3km800부터 종점까지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다만, 독립시설 중 궤도시설은 기존 서울지하철 8호선과의 연계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궤도구조를 선정하도록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분야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서울시가 주관(설계 용역, 관급 자재 구매 및 시운전 포함)하여 시행한다. 다만 별내선 기본계획 노선 상 BN3정거장 이후(6km750)부터 종점까지의 송변전, 전차선, 역무자동화 및 통신시설의 시공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③ 시스템분야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외 부대경비의 분담 및 산정 기준 등은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공동시설 중 신규차량 구입 및 차량기지 개량 및 증설은 서울시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BN6정거장 유치선, 모타카선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하며 변전소 구조물은 제1항의 독립시설 주관 시행구간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시행한다.

⑤ 부대용역 중 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용역은 서울시가 시행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개발사업), 철도교통안전진단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시행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은 별내선 운영과 관련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사항을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별내선 관리 및 운영 직원들의 근무공간을 위해 현업 지상건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⑧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환승시설(별내역사) 사업을 시행하는 LH와 다산진건지구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는 사업 시행기관과 별내선사업과의 중복공종 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 수립 등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⑨ LH와 경기도시공사는 별내선사업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무상사용 범위와 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사업비 부담) ① 별내선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독립시설 : 행정구역 경계 내에 건설되는 시설의 실제 소요 사업비를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부담

2. 공동시설 사업비와 부대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행정구역 거리 비례로 계산된 금액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부담

②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50을 각각 분담한다.

③ LH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별내지구 및 갈매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중 별내선 사업으로 확정된 1,200억원을 정액으로 한다.

④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다산진건지구 및 다산지금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중 별내선 사업으로 확정된 435억원을 정액으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액으로 부담하는 사업비는 행정구역 거리 비례로 계산된 금액을 서울시와 경기도로 배분하여 사용한다.

제6조(사업비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연차별·분기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차기년도 집행계획을 기관별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사업비부담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부담기관에서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은 연차별·분기별 사업비 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공정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부담기관에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비부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과 사업비부담기관은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정산) ① 사업시행기관은 별내선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독립시설과 공동시설의 내역서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독립 시설의 내역서는 사업비 부담 구간별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은 별내선사업의 준공일 또는 협약의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종 계약서 및 지출서류 등 관련 증거서류가 첨부된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호 간에 통보하여 사업비를 정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산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분담) ① 별내선사업 시행에 따른 아래 각 호에 관한 업무는 해당 구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수행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행위절차 이행
2. 별내선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물건, 영업권, 지장물 등 보상, 재결 및 대집행 업무처리
3. 지장 노점상 이전 또는 철거
4. 구리시 수택동 우수저류시설, 남양주시 별내동 환승시설(별내역사) 사업, 메가볼시티 등 관할 구역내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사업시행 협조

②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LH 및 경기도시공사는 별내선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상호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및 운영비 부담 등) ① 별내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한다.

② 별내선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은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의 부담 또는 수익으로 한다.

③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별내선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 해당 구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거장 활용방안 시행 등에 관한 운영협약을 별내선사업 영업개시일(임시사용일) 12개월 이전까지 체결하기로 한다.

제10조(건설 및 운영기간) ① 별내선 사업의 건설기간은 협약체결일 부터 건설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② 별내선사업의 운영기간은 관계 규정에 따른 영업개시일(임시사용일)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한다.

제11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별내선 사업으로 건설되는 시설물 일체와 별내선 사업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는 준공과 동시에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에 각각 귀속된다. 다만, 철도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및 구분지상권은 시설물 존속 시까지 운영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12조(기타 사항) ① 별내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협약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별내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경기도 및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상호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서면협의를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LH,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서명·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고 협약에서 규정한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LH,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7부를 작성하여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경 기 도 지 사

남 양 주 시 장

구 리 시 장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경 기 도 시 공 사 사 장

붙임 2

별내선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구 간 : 서울시 강동구 암사(8호선) ~ 남양주시 별내지구
- 사업규모 : 연장 12.9km(구리8.0, 남양주2.3, 서울2.6) / 정거장 6개소
- 사업기간 : '10 ~ '22 ○ 사업시행 : 서울시·경기도 분담시행
- 사 업 비 : 12,806억원(B/C 1.08)

시 행 주 체	구 간	연장 (km)	정거장 (개소)	사업비(억원)						
				계	국 비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	부담금
계	서울 강동 암사 ~남양주 별내	12.9	6	12,806	7,331	1,223	1,309	968	340	1,635
서울시	암사~서울시계	2.6	1	2,772	1,223	1,223	-	-	-	326
경기도	서울시계~별내	10.3	5	10,034	6,108	-	1,309	968	340	1,309

□ 추진경위

- '05. 11.29 : 수도권동북부 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별내선 구상)
- '06. 7월 :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광역철도)
 - 별내선 및 역사신설(1,000억 원 LH부담), 사업기간 '07~'16
- '06. 5~11월 : 예비타당성 조사(B/C 0.91, AHP 0.508 기획예산처)
 - 연장 11.4km, 정거장 4개소(서울1, 구리2, 남양주1), 사업기간 '07~'16
- '07.12.24 :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신규 광역철도 지정)
- '10. 5.20~'11. 8.1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道 주관 국토부&서울시 공동)
- '11. 8.30 : 별내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보고(道→국토부)
- '14. 1. 8 : 별내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용역 착수
- '14. 6. 9 :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
 - '14. 6. 17. ~ 6. 19. : 주민설명회 3회 개최(구리시, 남양주시, 강동구)
- '14. 6.17 : 별내선 기본계획 수립 사전협의(국토부, 서울시 등)
- '14. 7.15 : 별내선 기본계획 총사업비 조정 협의요청(道→국토부)
- '14. 7.17 : 별내선 기본계획 승인 신청(道→국토부)
- '14.12. 5 : 별내선 기본계획 총사업비 협의 완료(기재부→국토부)

□ **사업비 분담기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지자체 시행기준)

● **국비&지방비**

구 분	당초('14. 3. 31이전)		변경('14. 3. 31이후)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
지자체 시행	국가:지방=60:40	국가:지방=40:60	국가:지방=70:30	국가:지방=50:50

- **사·도간 사업비** : 관계 시·도의 광역철도 구간에 실제 들어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 사·도지사가 협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정함

⇒ **광역 사·도간 분담비율은 행정관할 구역별 부담을 원칙으로 국토부 조정**

-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훈령 제439호, ' 14. 10. 17.) 제10조**
- **독립시설** : 관계 지방자치단체 경계 내에 건설되는 시설의 실제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공동시설** : 기존선을 연장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리 비례로 계산된 금액을 부담
 - **도&시·군**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협의하여 따로 정함

⇒ **도&시 분담비율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50:50으로 결정 통보(' 14. 8.22)**

□ 기관별 사업비 분담내역

구분		부담액 (억원)	재원별 비율	비고
재원별	합계	12,806.10	100.0%	
	국비	7,329.41	57.2%	
	지방비	3,841.69	30.0%	
	광역교통개선 대책부담금	1,635.00	12.8%	
지역별	합계	12,806.09		
	소계	10,028.01		
	경기도	국비	6,103.51	47.7%
		도비	1,307.90	10.2%
		시비	1,307.90	
		구리시	973.18	7.6%
		남양주시	334.72	2.6%
		광역교통개선 대책부담금	1,308.70	10.2%
	소계	2,778.09		
	서울시	국비	1,225.90	9.6%
		시비	1,225.89	9.6%
		광역교통개선 대책부담금	326.30	2.5%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